일감법학 | 제42호
2019년 2월 3-37쪽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Ilkam Law Review
Vol.42, Feb., 2019. pp.3-37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

거창·산청·함양 사건 유족운동의 전개과정:*

유족의 상(喪)의 과정과 감정동학

The Movement of the Bereaved Families of Geochang-Sancheong-Hamyang Massacre:

The Mourning Method and the Emotional Dynamics of the Bereaved Families

김 명 희**
Kim, Myung-Hee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유족의 상(喪)의 과정: 부인과 시인의 정치, 그리고 수행집단
Ⅲ. 거창·산청·함양 사건 유족운동의 전개 과정
Ⅳ. 나가며

이 연구는 거창·산청·함양 사건 유족운동의 전개과정을 유족과 국가, 유족과 언론, 유족과 시민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상호작용하며 수행하는 유족의 상(喪)의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특히 이 글은 사건의 진실에 대한 국가의 부인(denial) 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유족들의 시인(recognition) 전략에 초점을 맞추었다. 유족들의 시인 전략은 1) 희생자의 묘비 건립과 추모(기념) 사업에 초점을 둔 사회적 인정 투쟁과 2) 명예 회복과 배상 입법에 초점을 둔 법적 인정 투쟁으로 구축되었다. 이 과정은 거창 유족회와 산청·함양 유족회가 사건의 진실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와 사회적 공감을 확장하며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투고일 : 2018. 12. 31. / 심사의뢰일 : 2019. 1. 16. / 게재확정일 : 2019. 2. 7.

* 이 글은 2018년 10월 12일 "거창사건과 이행기 정의"를 주제로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국내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다. 생산적인 논평으로 논문의 완성에 도움을 주신 건국대학교 김종곤 선생님과 익명의 심사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과제번호: NRF-2016S1A5A2A03927743).

** 경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조교수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과거청산운동을 이끈 중요한 주체였다는 점을 입증한다.

[주제어] 거창・산청・함양 사건 유족운동, 부인과 시인의 정치, 유족의 상(喪)의 과정, 정치적 유가족, 사회적 공감, 이행기 정의

Ⅰ. 들어가며

'거창사건'[1]은 크게 보면 1950년 10월 이후 전개된 지리산 지구 공비토벌 과정에서 전개된 일련의 적성지구 초토화 작전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작전을 수행한 11사단 활동지역에는 수많은 민간인 학살 사건이 발생하였다. 산청, 함양 지역은 물론 전남의 남원, 함평, 순창 등 11사단 주둔 혹은 이동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한 민간인 학살은 하나의 고리를 이루고 있으며, 사실상 하나의 사건이라 말할 수 있다. 이 시기 민간인 학살은 1948년 제주도 4・3 사건의 초토화 작전에서 시작하여 1951년 초반까지 진행된 '빨갱이 사냥'의 일환이었다.[2]

이 점에서 엄밀히 말해 1951년 2월 9일-11일 719명의 주민이 국군에 의해 희생당한 사건을 일컫는 '거창사건'이라는 명명은 사건의 일부만 지칭할 뿐, 전체를 포괄하는 정확한 명칭이 아니다. 거창에서의 학살 이전인 2월 7일부터 이미 동일한 부대, 즉 11사단 9연대 3대대에 의해 이웃한 산청군, 함양군 일대에서도 민간인 집단학살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특무대 문서철에서도 확인되며, 연대작전명령에 의한 공식적인 학살사건이었다. 따라서 정확한 명칭은 11사단 9연대 '작명 5호'에 의한 '거창・산청・함양 민간인 학살사건'이 되어야 한다.[3] 그럼에도 '거창사건'으로만 알려진 것은 초기 진실

1) 이 글이 주로 다루는 범위는 거창사건 유족 운동의 전개과정이지만, 거창사건 유족운동과 산청・함양사건 유족운동은 동일한 사건에서 서로 다른 경로로 발전한, 또 상호 연계된 운동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관점에서 "거창・산청・함양 사건"이라고 명명하여 향후 종합적인 고찰의 여지를 열어두고자 한다. 하지만 거창과 산청・함양 지역에서 자행된 학살이 그 성격에 있어 동일 사건이라 할지라도, 유족운동의 발생 경로에서 거창사건 유족회와 산청・함양 사건 유족회는 서로 독립된 궤적을 밟아 왔기에 이 연구는 거청사건 유족회를 중심으로 고찰한 후, 그 연관을 살피고자 한다.

2) 김동춘, "거창사건의 전개과정"(2001. 4), 한인섭 편, 거창양민학살사건 자료집(Ⅶ),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10쪽.

3) 이창호, "산청・함양・거창 민간인학살사건에 대한 형사법적 재조명", 민주법학 제47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1, 221쪽. 이창호가 이 사건을 '산청・함양・거창사건'이라고 부른 것은 학살의 발생순서일 뿐 아니라 서부 경남의 거점이 진주라 진주에서 가까운 지명의 수순으로 부르는 용례에 근거한 것라 보인다. 이 글에서는 가나다순 표기에 따라, 또 유족운동의 발생과정에 따라 거창・산청・함양 사건이라 명명하겠다.

규명 국면에서 국가가 산청과 함양 학살을 은폐했기 때문이다.[4] 후술하겠지만, 이 또한 국가범죄 부인(denial)의 한 양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거창・산청・함양 민간인 학살사건을 동일 작전, 동일 부대에 의해 의한 하나의 사건으로 바라볼 때 이 사건은 산청・함양에서 705명, 거창에서 719명을 아울러 도합 1,424명의 민간인 희생자를 낳은 국가범죄 내지 국가폭력(state crime or state terror)이자, 인도에 반하는 죄(crime against humanity)임과 동시에 전쟁범죄(war crime)에 해당한다. 이러한 법적 성격에서부터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한 지침을 찾자면 가해자인 국가는 ① 철저한 진상규명에 기초하여, ② 책임자를 처벌하고, ③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④ 국가배상을 해주어야 하며, ⑤ 재발방지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하지만 알다시피 이 사건은 재판을 통해 일부 진실이 규명되고 관련자가 처벌되었지만,[5] 예상했던 재판의 유죄판결이 집행되지 않음으로써 책임자에 대한 사실상의 형사처벌도, 총체적인 진실 규명도, 세월 동안 피해자에 대한 합당한 구제와 국가배상도, 따라서 실질적인 명예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미완의 사건으로 남았다.[6]

그럼에도 이 사건은 발생 직후 신중목 국회의원의 죽음을 무릅쓴 용기에 의해 국민들과 외국에 알려진 독특한 사례다. 이른바 '거창사건'이 한국 사회에서 다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과 맥락을 다소 달리하고 있는 것은 1951년 당시 이 사건이 국회와 정부에서 주요 이슈로 떠올랐으며 진상조사를 거쳐 일부 진실이 폭로・규명되고 형식적으로나마 가해자에 대한 유죄가 선고된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법원에서 처벌되었다는 것이 다른 민간인학살 사건과 거창사건의 큰 차이점이며, 이후에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낮은 차원의 명예회복을 시도했다는 특징을 지닌다.[7]

따라서 거창사건은 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인다. 첫째는 법적・

---

4) 진실위 조사관 백서 준비모임, "이승만 대통령이 단속한 '부끄러운 치마 속', 참담했다 : [남겨진 진실 미완의 화해 ⑤ 산청・함양・거창 민간인 학살] 작명 5호" "전원 총살하라", 오마이뉴스, 2011.7.14.,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94751>, 검색일: 2018.10.5.

5) 1951년 12월 16일 대구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11사단 9연대장(오익경)은 무기징역, 3대대장(한동석)은 징역 10년에 처해졌다. 그리고 국회의 조사를 습격, 방해한 경남지구 계엄민사부장 김종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명령권자인 신성모 국방부장관이 해임되었다. 그러나 정작 실질적인 책임자인 제11사단장은 책임 추궁을 받지 않았다.

6) 이승만은 학살 지령자 국방장관 신성모를 처벌하는 대신 내무・법무・국방장관을 동시에 경질함으로써 그의 책임을 물타기 했고 학살책임자들을 1년 만에 차례로 특사로 방면하여 군대에 복귀시켰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과 책임이행에 관한 종합적인 백서나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으며, 국방전서에도 당시의 피학살자는 통비(通匪)분자로 시정 없이 기록되어 있다.

7) 노용석, 국가폭력과 유해발굴의 사회사: '빨갱이'가 된 인간의 뼈, 그리고 유해발굴, 산지니, 2018, 82쪽.

정치적 측면으로, 한국전쟁과 관련해 발생했던 민간인 학살사건 가운데 진실규명과 사후 처리에서 가장 앞선 선례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거창사건은 유사한 성격의 다른 사건이 법적・정치적으로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를 가늠케 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둘째는 문화적 측면으로, 이 사건의 실체와 진상이 대략적으로나마 밝혀지고 국가적 차원의 위령사업 대상이 되면서 거창사건은 과거의 국가폭력으로 인한 학살사건이 이후 문화적으로 어떻게 재현되어야할 것인가에 대해 시사점을 주고 있다.[8] 세 번째로 이행기 정의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거창사건 발생 직후 일부 진실규명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자행된 국가의 부인 행동과 이를 시정・극복하기 위한 유족들(bereaved families)의 노력은 한국 과거청산 운동의 성찰과 진전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 연구는 특히 세 번째 측면에 주목하여 거창사건 유족운동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유족운동이란 한국전쟁은 물론, 5・18 민주화운동 및 세월호 참사와 같이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이 유족회를 구성하여 진실 규명과 사건의 해결을 위해 집합행동을 수반한 운동을 말한다.[9]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유족회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선행연구의 공간적 범주가 지역에 한정된 경우가 많다. 한상구, 이동진의 경우 경상남북도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 진실규명과 피학살자 유족회의 활동을 다루고 있다. 이윤갑의 경우 경북 성주 지역의 피학살자 유족회 활동을 다루고 있다. 4월 혁명 직후 전국 차원에서 전개되었던 피학살자 유족회 활동에 대한 고찰로는 이창현의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가 시간적으로 1960년대 피학살자 유족회 활동에 한정되어 있다면, 1990년대 제정된 과거사 입법 및 2005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설립 이후 결성된 유족회의 활동에 대한 정호기, 노용석, 김산영의 연구가 있다. 정호기의 경우 전라남도 지방을 중심으로 피학살자 유족회의 결성과 진실규명운동을, 노용석 경우 청도 유족회의 결성과정과 유족의 역사 인식을, 김산영의 경우 청도・경산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인학살사건에 대한 유족의 인식과 대응 과정을 다루었다.[10]

---

8) 김기곤, “국가폭력, 하나의 사건과 두 가지 재현”, 민주주의와 인권 제9권 제1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9, 37쪽.

9)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한국 과거청산 운동에서 중요한 행위자로 부상한 유가족의 범주를 한국 정치문화의 심층에 자리한 가족의 존재형태로 바라볼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김명희, “국가에 대항하는 가족: 세월호 연대의 감정동학과 루트 패러다임”, 탐라문화 제56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7, 217쪽.

10) 한상구, “피학살자 유가족 문제: 경상남북도지역 양민피학살자유족회”, 한국사회 변혁과 4월 혁명, 10월 혁명 연구소, 1990; 이동진, “국민과 비국민의 경계: 피학살자유족회사건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제101집, 한국사회사학회, 2014; 이창현, “1960년대 초 피학살자유족회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정호기,

거창사건을 직접 다룬 학술논문은 유족운동과 결합되어, 또는 그 성과를 반영하여 2000년 이후에 주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1) 거창사건의 진실과 성격 규명에 관한 연구[11] 2) 거창사건의 법적 해결(명예회복 및 배보상)에 관한 연구[12] 3) 2004년 건립된 거창사건 추모공원을 둘러싼 기억의 정치에 관한 연구[13] 등이 있다. 그러나 정작 거창사건의 피해 당사자이자 그 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정치적 행위자[14]였던 유족회의 활동에 대한 연구는 공백 지점으로 남아있다.

이 글은 거창 유족회를 중심으로 유족회가 65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어떤 전략으로 가족 상실의 아픔을 딛고 과거청산운동의 주체로 싸워올 수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유가족을 보상과 치유가 필요한 2차 피해자로 바라보는 대신 과거청산운동을 이끈 핵심적 주체로 조명할 것이다. 특히 이 글은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을 둘러싼 국가의 부인 행동과 이를 시정하기 위한 유족들의 시인(recognition) 전략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이러한 부인과 시인의 정치를 유족과 사회, 특히 사건의 진실을 전달하는 수행집단(carrier group)과의 인지적・정서적 상호작용을 통해 전개되는 '유족의 상(喪)의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의 결성과 진상규명운동: 전라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9권 제2호, 학연문화사, 2006; 노용석,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회의 결성과정과 유족의 역사인식에 대한 연구", 제노사이드 연구 1, 한국제노사이드학회, 2007; 김산영, "민간인학살사건에 대한 유족의 인식과 대응: 청도・경산 지역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11) 김동춘, 앞의 논문; 박명림, "국민형성과 내적 평정: '거창사건'의 사례연구-탈냉전 이후의 새 자료, 정신, 해석", 한국정치학회보 제36권 제2호, 한국정치학회, 2002.

12) 한인섭, "거창양민학살사건의 법적 해결: 관련법의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제42권 제4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174-214쪽; 한인섭, "거창사건 피해자를 위한 배상입법: 그 당위와 내용", 법과 사회 제27권 제27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04; 도경옥, "거창양민학살사건의 국제형사법적 분석", 서울국제법연구 제10권 제1호, 서울국제법연구원, 2003; 이창호, "산청・함양・거창 민간인학살사건의 법적 재검토", 민주법학 제26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4; 임상혁, "거창사건 관련 판결과 소멸시효 항변", 법과 사회 제27권 제27호, 법과 사회이론학회, 2004; 이창호, "산청・함양・거창 민간인학살사건에 대한 형사법적 재조명", 211-243쪽; 이덕연, "'거창사건'에 대한 대법원판결(2008.5.29. 2004다33469) 평석: '견벽청야'(堅壁淸野)의 군사작전과 법리구성의 구조적 유사점을 주목하며", 저스티스 제129호, 한국법학원, 2011; 이형도, "거창 민간 학살 사건", 한일교육연구 통권 제19호, 한일합동교육연구회, 2013.

13) 한성훈, "거창사건의 정치사회학적 분석: 기억의 정치와 학살의 승인", 사회와 역사 제69집, 한국사회사학회, 2006; 한성훈, "기념물을 둘러싼 기억의 정치와 집단 정체성: 거창사건의 위령비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제78집, 한국사회사학회, 2008; 김기곤, 앞의 논문; 김백영/김민환, "학살과 내전, 공간적 재현과 담론적 재현의 간극: 거창사건추모공원의 공간 분석", 사회와 역사 제78집, 한국사회사학회, 2008.

14) 정치적 행위자(political agent)란 행위성을 발휘하여 세계를 만들고 변화시키는 과정에 개입하는 역사적 주체들을 뜻한다. 정치적 행위성은 의식과 의도성을 전제하지만, 특정한 역사와 사회, 문화 속에 위치하여 그 사회의 담론, 사유양식, 감성들에 정박된 것이기도 하다. Aretxaga, Begoña, *Shattering Silence: Women, Nationalism, and Political Subjectivity in Northern Ireland*,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pp. 8-9.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해보고자 한다.

이 글의 서술은 거창사건 관련 선행연구와 2018년 7월-11월 거창과 산청 지역 유적지 및 추모공원 현지답사, 6차례에 걸친 관련자 심층면접에 근거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한인섭 교수가 2003년과 2007년 1, 2차에 걸려 편집한 <거창양민학살사건 자료집>(Ⅰ)-(Ⅶ), (사)거창사건 희생자유족회와 (사)산청・함양사건 양민희생자 유족회에서 매년 진행한 <합동 위령제 및 추모식 자료집>, 군 사업소에서 간행된 보고서와 책자, 유족회 차원에서 사건의 진실과 유족 운동의 역사를 직접 기록하여 발간한『거창양민학살: 억울한 죽음 뒤처리』(김운섭 저, 2017),『산청・함양사건의 전말과 명예회복』(강희근 저, 2004),『운명』(정재원 저, 1998; 2004) 등을 분석의 기초자료로 삼았다. 거창사건 생존자・체험자 증언집인『거창은 말한다』(한인섭 편, 2007)도 유족회 활동에 참여한 주요 인물들의 증언을 채록한 소중한 역사자료다. 기존 연구에서 활용되지 않았던 유족들의 자전적 서술과 증언은 과거청산운동의 일주체이자 정치적 행위자로서 유족회의 자기인식과 대응 전략을 이해할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 글은 다음의 순서로 전개된다. Ⅱ장은 예비적 논의로서 거창사건 유족운동을 읽어내는 이 글의 이론적 관점과 주요 개념을 소개한다. 이어지는 Ⅲ장에서는 거창사건 유족운동의 전개과정을 크게 네 국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산청・함양 지역 유족운동과 간략한 비교를 통해 한국 이행기 정의의 전망에 시사하는 함의를 도출한다. Ⅳ장에서는 전체 논의를 요약하고 마무리한다.

Ⅱ. 유족의 상(喪)의 과정: 부인과 시인의 정치, 그리고 수행집단

1. 부인과 시인의 정치

거창・산청・함양 사건 유족들은 한국전쟁기 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이 낳은 정치적 유가족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최근 전쟁이나 국가폭력, 재난과 같은 대형참사가 낳은 유가족을 다룬 연구들은 가족 상실을 경험한 유족들이 일정한 통과의례를 수반한 상(喪)의 과정을 수행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사람은 사별에 직면해 기존의 사회관으로부터 분리되고, 위기로 가득 찬 과도기를 통과하여, 새로운 사회관으로의 통합을 모색한다. 이 과정은 원래의 위치로는 돌아갈 수 없는 위험한 여정이다. 이 여정을 ‘유지(遺志)의

사회화' 과정이라 말할 수 있는데, 이는 죽은 사람이 남긴 '유지(遺志)'의 실체를 상정하고 계승하는 사회적 활동을 통해 고인의 생명을 영속시키려는 심리기제에 기인한다. 다시 말해 유족은 유지(遺志)의 사회화를 통해 실은 자기 자신의 재(再)사회화, 나아가 -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이라는 가혹한 문을 통과하고 난 후 - 사회관계의 재구축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다.[15] 그리고 그 방법은 매우 창조적이고 다양할 수 있다.

한국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맥락에 이 논의를 접목한 미나베 유코는 『열사의 탄생: 한국민중운동에서의 한(恨)의 역학』에서 '전국민주화운동유족협의회'의 작동방식을 섬세하게 고찰한 바 있다. 유족들은 크게 비애의 심리 과정, 문화로서의 의례 과정, 그리고 가치의식의 전복을 동반하는 사회 과정을 거쳐 죽은 자와 산 자의 연대라는 너른 들판에서 재(再)사회화 과정을 통과한다. 통과의례의 첫 단계는 장례다. 장례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유족과 그 이외의 사람들이 비애를 공동으로 표출하는 연대감에서 비탄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확인・강화하는 점에 있다. 사회적인 차원에서 '비애의 작업'이 수행되는 것이다. 그 때문에 장례라는 분리의례의 의미를 지닌 문화적 장치는 유족과 사회의 상호관계를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다.[16]

그런데 헤아려보면 한국현대사에서 정치적 폭력에 연루된 유가족의 상(喪)의 과정은 사건의 진실에 대한 가해자의 부인, 은폐, 축소에 의해 번번이 지연되고 억압되어 왔다. 그리고 이와 조응한 유족들의 대응 전략 또한 국가의 부인 행동과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는 특징을 보였다. 여기서 부인(denial)이란 인권침해 사실을 부정함으로서 인간의 사회적 고통을 조장・악화하는 행위로, 국가범죄 부인의 문제는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의 중요한 쟁점을 구성한다.[17] 역사적으로 볼 때 중대한 인권침해 과정이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부인의 정치(politics of denial)는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일컫는 시인의 정치(politics of recognition)를 함께 촉발했는데, 여기서 시인의 정치란 중대한 인권침해

15) 노다 마사아키, 서혜영 옮김, 떠나보내는 길 위에서: 대형 참사 유족의 슬픔에 대한 기록, 팬타그램, 2015, 254-255쪽.

16) 김명희, 앞의 논문, 217쪽.

17) 여기서 '시인'이라는 용어는 과거에 부정했던 혐의나 의혹이 실제로는 진실이었다고 확인해주는 공적 담론에서 주로 사용된다. "그렇다. 우리는 과거의 부인을 공식 철회한다. 그 사건은 실제로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아야 했던 사건이었다. 의혹이 부분 사실이었음을 확인하는 바이다. 우리는 조사 위원회를 출범시킬 것이다"와 같은 형식이 대표적 사례다. 코언, 스탠리, 조효제 옮김, 잔인한 국가, 외면하는 대중: 왜 국가와 사회는 인권침해를 부인하는가, 창비, 2009, 509-510쪽; 김명희, "일본군 위안부 운동과 시인(recognition)의 정치: 한국의 사회적 기억 공간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34권 제3호, 한국여성학회, 2018, 118-119쪽. 물론 이와 같은 시인 행위는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둘러싼 다양한 행위자들이 개입하는 역동적인 정치 과정의 산물이다.

사건에 대한 가해자의 부인 행동을 시정하고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사회적 고통을 경감·해결하기 위한 제반 정치적 활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

2. 문화적 트라우마와 수행집단

이 지점에서 필자가 여러 지면을 통해 소개한 문화적 트라우마(cultural trauma) 이론과 수행집단(carrier group) 개념은 거창사건을 둘러싼 부인과 시인의 정치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여전히 유의미한 시사점을 준다. 알렉산더에 따르면 트라우마는 사건 그 자체에 대한 심리적 충격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충격적인 사건에 자신들의 미래가 종속되어 있다고 느끼는 집단 정체성에서, 나아가 사건과 사건의 재현 사이의 간극(gap)에서 발생한다. 그렇기에 트라우마의 경감과 해결의 향방 또한 외상 사건과 관련한 지배적 서사를 공적 청중에게 주장하는 수행집단의 부상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수행집단은 가해-피해관계를 포함한 외상 사건의 성격과 고통의 의미를 공적 청중에게 전달하는 발화자를 뜻한다. 만일 이들의 발화가 성공적이라면, 외상 주장을 듣는 청중이 점차 확대되어 사회 전반에 있는 다른 공중들을 포함시킬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수행집단의 대안적 지식주장을 포함하는 시인의 정치는 문화적 트라우마의 경감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다.[18]

실제 거창사건 유족운동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건의 '공론화' 국면이 사건의 해결 과정에 결정적으로 중요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거창사건이 사회적 공론장에 부상하게 된 초기 과정에서 핵심적인 수행집단은 언론이었다. 언론은 세 국면에서 유족과 상호작용하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먼저 거창사건에 대한 첫 보도는 1951년 3월 30일 국회의 진상 폭로에서 시작되었다. 대체로 국회의 활동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던 당시의 보도내용은 독자적인 취재가 거의 불가능했던 전시 하 언론의 한계를 보여준다.[19] 그러다 국회 조사단에 대한 위장습격사건이 폭로된 뒤 거창사건은 거대한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되었고, 언론보도량 또한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1951년 12월 재판이 종료된 뒤 거창사건은 언론에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후 가해자들은 얼마 되지 않아 석방되었으며, 이 사건은

18) 알렉산더, 제프리, 박선웅 옮김, 사회적 삶의 의미: 문화사회학, 한울, 2007, 214-215쪽; 김명희, "일본군 위안부 운동과 시인(recognition)의 정치: 한국의 사회적 기억 공간을 중심으로", 115쪽 참조.

19) 한편 해외에서 New York Times 1951년 4월 11일자는 거창사건에 대한 첫 보도였고, 분량도 상당하며, 직접 취재한 부분과 전문한 보분을 모두 보도하고 있다. 이 보도는 거창사건에 대한 수많은 후속보도로 이어졌다. 미국 언론에 비친 기사는 1951년 모두 29건, 1960년 모두 10건이다. 김동춘, 앞의 논문, iii쪽.

잊혀졌다.

둘째, 거창사건이 두 번째로 공론화된 시기는 1960년 4월 혁명 직후였다. 1960년 5월 11일 박영보 면장의 피살사건이 준 엄청난 충격은 순식간에 거창사건을 전국민의 관심사로 재조명하게끔 했다. 그로부터 동년 6월 21일까지 거창사건의 수많은 진실이 여러 신문기자들의 취재에 힘입어 폭로되었고, 이 때 산청・함양 지역의 학살도 함께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20] 이 때 유족들은 언론 보도와 국회 조사를 통해 스스로를 공론장에 노출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임했다.

셋째, 거창사건이 사회적 조명을 받게 된 세 번째 국면은 1987년 민주화와 함께 광주민중항쟁 및 5공 비리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개최되고 새로운 정치적 기회구조가 열렸던 국면이다. 1988년에는 남도일보에 <거창의 비극>이, 1990년에는 거창 출신인 차석규의 집필로 <신원사건: 숨은 이야기>가 거창신문에 연재되었다. 물론 유신 시대 엄혹한 사회분위기 속에서도 거창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가 간헐적으로 이어졌음을 신문 또는 잡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앙일보의 <민족의 증언>(1971), 동아일보의 <비화 제1공화국: 거창사건>(1974)은 진지하게 거창사건에 초점을 맞추었던 대표적 기사다. 이후 부산일보에 <비화 임시수도천일 제2화 거창사건: 신원의 비극>(1982)이라는 연재기사가 실렸다. 이들 연재기사는 매우 충실한 취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이 중 일부는 단행본으로 발간되었다. 신문의 내용, 지면이 갖는 이미지와 기사 처리방식은 그 자체가 하나의 역사기술이기도 했다.[21]

넷째, 1996년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법) 제정 이후 사단법인으로 전환한 유족회의 활동 범위가 확장되면서, 거창사건의 진실을 발화하는 수행집단은 이제 언론에서 유족회 주도로 연계된 학계 및 시민사회 내 다양한 행위자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발전 과정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22]

---

20) 한인섭 편, 거창양민학살사건 자료집(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iii-iv쪽. 이를 통해 제4대 국회 제35회 국회본회의에서 거창・산청・함양사건 진상조사 결의안이 채택되게 된다.

21) 신문의 장기연재기사를 단행본으로 엮은 책이 있는데, 『거창양민학살사건』(노민영/강희정 저, 1988년)이 최초이며, 거창 출신인 차석규의 『남부군과 거창사건』이 있다. 한인섭 편, 거창양민학살사건 자료집(Ⅶ),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2007, iii-iv쪽.

22) 아래의 표는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함평사건 유족회의 기록물의 특성을 분석한 김유선을 참고하되 거창사건 유족운동의 사례에 맞게 변형한 것이다. 김유선, "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의 소장 기록물 분류표 개발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9쪽 참고.

〈표 II-1〉 수행집단의 확장 과정: 거창사건 진상규명 관련 주체와 쟁점

시기	진상규명주체	시기별 주요 쟁점
한국전쟁기	국회, 유족, 정부	거창사건 가해자 처벌 뒤 사면
4・19 시기	유족회, 언론, 정부	진상규명과 피해보상, 관련자 처벌
군부독재기	없음	은폐・왜곡, 유골 강제 이장, 유족들에 대한 감시와 탄압
1980년대 후반	언론, 유족회, 지자체, 국회	추모/위령사업, 명예회복 입법운동, 지자체의 공적 인정
1990년대 후반 -	언론, 시민단체, 학계, 유족, 지자체, 국회	기념/위령사업, 학계의 본격적 연구와 사회적 공감대 확산, 배보상 관련 특별법 개정

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유족회의 활동 또한 크게 네시기로 구분해볼 수 있다. 첫째, 1951-1961년 거창사건 진실의 부분적 시인과 부인, 그리고 이에 맞선 유족들의 시인의 정치가 묘비의 복원과 건립을 둘러싸고 전개되었던 시기, 둘째, 5・16 군사쿠데타 이후 유족회 활동의 암흑기, 셋째, 1988년 '거창사건 양민학살희생자 유족회'를 결성 이후 추모 사업과 특별법 제정에 중점을 둔 유족회 활동의 성장기, 넷째, 1997년 (사)거창사건 희생자유족회로 명칭을 변경한 후 특별법 개정을 목표로 시민사회로 사회적 공감대를 확장해가던 사회적 인정투쟁의 시기가 그것이다. 각 국면을 연대기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II. 거창・산청・함양 사건 유족운동의 전개과정

1. '거창사건 부인'과 '묘비의 정치'(1951-1961): 유족회의 생성

1.1 잘못된 첫 단추: 거창사건 부인의 세 차원(1951-1954)

거창사건은 신중목 위원의 활약에 의해 사건 발생 직후 국회에서 폭로된 후, 두 차례에 걸쳐 그 진실이 부인(denial)되었던 사건이다. 첫 번째는 1951년 사건 직후 국회조사단이 현지 실사를 위해 파견되었을 때 빨치산으로 위장한 국군들이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협사격을 한 것이고, 두 번째는 1960년 4・19 이후 유가족들이 세운 위령비와 합동묘역을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국가에서 다시 파괴한 것이다. 유가족들이 정권이 희생자들을 '세 번 죽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해온 것도 이 때문이다.[23]

중요한 점은 이 과정에서 거창사건 부인의 세 번째 차원이 잉태된 것이다. 그것은 '거창사건'이라는 명명을 통해 거창사건이 발생한 전체적 맥락과 본질을 은폐한 것에서 비롯된다. 앞서 말했듯 거창 지역의 학살과 산청・함양 지역의 학살은 제11사단 9연대의 작전명령 제5호에 근거한 연대 합동작전의 필연적 귀결이었다. 작전명에 근거하여 부대가 이동하고, 인명을 살상하고, 재산을 파괴하였다. 따라서 '거창사건'과 '산청・함양사건'은 전체로서 하나의 단일하고 동일한 사건으로 처리되어야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1년 당시 거창지역의 조사만 이루어지고 산청・함양에서 이루어진 학살은 제대로 조사되지도 않았다.[24] 전체 사건에서 극히 일부분을 떼어 내어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였을 뿐 아니라, 사건의 성격, 규모, 가해자와 피해자, 사건의 진행과정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왜곡과 축소 그리고 조작이 이루어졌다. 당시 재판이 지닌 의미를 굳이 찾자면, 국가권력이 스스로 학살을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했다는 사실 뿐이다. 그 이외의 모든 점에서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다. 더욱 중요한 점은, 거창지역의 재판이 졸속으로 끝나자 다른 가해자와 산청・함양과 같은 다른 지역의 학살은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이 '사건 종료'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25] 이것은 동일 사건을 둘러싼 두 개의 유족운동을 – 또 반목과 갈등을 – 로 정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 과정을 거쳐, 이 사건의 직접적 피해자인 유족들의 권리 또한 극히 제약되었다. 1951년 12월 재판이 종료된 뒤 거창사건 희생자들의 시신은 그대로 3년여 넘게 방치되어 있었다. 3년이 지난 1954년 4월 5일, 일부 국회의원과 유족들이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던 신원면 박산골에서 피학살자들의 유해를 수습하기로 결정하였고, 지게와 가마니, 괭이, 삽 등으로 총 3일 동안 유해를 발굴하였다.[26] 하지만 수습된 유해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만큼 훼손되었다. 이에 유족들은 뼈의 크기를 기준으로 남자뼈와 여자뼈, 어린이뼈 등으로 나눈 후 각각 '남자합동지묘', '여자합동지묘', '소아합동지묘' 등 묘소

23) 김백영/김민환, 앞의 논문, 12-13쪽.

24) 강희근, 산청・함양사건의 전말과 명예회복,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회, 2004, 172-184쪽.

25) 당시 학살의 피해자에 대한 은폐와 축소는 더욱 심각했다. 재판에 의해 확정된 피학살자의 숫자는 실제 학살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전체 규모에 비해 너무나 축소되었고, 피학살자 모두가 통비(通匪)분자이고, 노인과 아이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부녀자는 극히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부인되고 있다. 이것은 실체적이고 총체적인 진실에 대한 엄청난 왜곡이다. 가해자의 처벌과 관련한 재판 결과를 보더라도 일부 혐의자에 대한 유죄 인정은 사건의 객관적 진실을 최소화하여, 최소의 인원에게, 최소의 형량을 선고한 것에 불과했다. 그리고 예상했던 재판의 유죄판결도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음으로써 책임자 처벌은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 이창호, "산청・함양・거창 민간인학살사건에 대한 형사법적 재조명", 221-227쪽.

26)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1954년 4월 1일을 유족회를 구성한 날짜로 기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거창 및 산청・함양 사건 관련자 명예회복 노력과 성과, 2012, 25쪽.

3기를 박산계곡 인근 도로변에 조성하였다. 이제 살펴보겠지만 고인의 유해 발굴을 통해 시신을 수습하는 작업은 유족들 차원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진실 보존의 노력이자, 유족들 사이를 연결하고 추후 유족회 결성을 추동케 한 핵심 고리였다. 이로부터 죽은 자를 중심으로 결속된 유족회는 상(喪)의 과정을 함께 수행하는 애도의 공동체이자 국가의 부인 행동에 맞서 진실을 알 권리를 비롯한 피해자의 권리를 함께 실현하는 의제친족 집단의 성격을 갖게 된다.

1.2 1960년 유족회 결성과 박산묘역 위령비 건립(1960-1961): 유족과 고인(故人)

4・19혁명은 이승만 정권을 퇴진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이전 독재정권 하의 부조리한 관습들을 철폐하는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의 중요한 기점이었다. 4・19혁명 이후 수많은 구체제의 악습들이 개혁 혹은 청산의 대상이 되었고,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문제도 그 중 하나였다. 4・19혁명을 기점으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과 관련되어 있던 많은 유족들의 거센 공세가 시작되었으며, 유족들은 학살 이후 최초로 자신들의 조직인 '유족회'를 만들었다. 전국의 피학살 유족들은 일방적 침묵 상태에 있던 과거와 달리 적극적인 자세로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였고,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만드는 많은 활동을 개시하였다.[27]

거창사건 유족회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도 이 시기였다.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5월 11일 거창군 신원면에서는 거창양민학살사건의 피해유족들이 사건 당시 신원면장으로 무고한 주민들을 빨갱이로 군에 밀고하여 죽음으로 내몰았던 박영보를 산채로 불태워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거창 유족들이 갖고 있었던 울분의 분출로 빚어진 보복살인이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1951년 학살이 전국적 관심을 받게 되는 데에 기폭제로 작용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모든 언론이 유족들의 당시의 살인 동기가 과거의 대학살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특히 경상남북도의 유력 일간지가 4・19혁명 직후인 1950년 5월부터 거창사건의 진실을 알리는 보도를 일제히 게재하면서,

27) 당시 제4대 국회에서도 1960년 5월 23일 '양민학살사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하여 경남, 경북, 전남 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실시하였다. 이 때 만들어진 대표적인 유족단체들로는 '경상남북도피학살자유족회', '경주피학살자유족회', '마산피학살자유족회', '경산피학살자유족회', '금창피학살자유족회', '밀양피학살자위원회', '동래피학살자합동장위원회', '거창묘비건립추진위원회' 등이 있다. 노용석, 앞의 책, 81, 118쪽.

6월에 이르러서는 경상남북도 일대에서 발생하였던 주요 민간인 학살의 사례를 보도하기 시작했다.[28]언론 보도를 통해 이 사건이 전국으로 일파만파 퍼져나간 것은 한국전쟁 전후 유사 피해를 경험하고 침묵하던 유족들이 봉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속에서 유족회가 실시한 주요 활동 중 하나가 유해 수습과 발굴이었다. 앞서 말했듯 유족들에게 유해의 수습과 발굴, 기념은 거창사건 진실규명의 일환이자 중요한 시인 전략이었다. 거창 박산묘역의 위령비 건립 또한 1954년부터 논의되었고, 이승만 체제가 끝나자 유족들은 본격적으로 기념물 건립에 나섰다. 유족들은 1960년 3월 5일, 곧 다가올 3.15 선거를 의식해 이승만 정부에서 민심수습 차원으로 보조한 위령비 건립추진비 50만 환을 중심으로 '묘비건립 추진위원회'[29]를 구성하여 박산합동묘역 조성을 준비하는 동시에 국회 등에 거창사건의 보다 명확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활동을 펼쳤다.[30] 결국 제4대 국회는 거창군 국회의원 박상길 등의 제안을 받아들여 거창양민학살사건 재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960년 5월 25일에는 1) 진상규명 2) 유가족 생활안정 대책 마련 3) 석물운반사건을 백지로 돌릴 것 4) 위령제, 위령비 건립을 골자로 하는 유가족 호소문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1960년 5월 23일 거창군 등 양민학살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단파견결의안'을 통과하였고, 6월 3일부터 4일까지 거창군 신원면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31]

1960년 6월 1일 '신원 유족회'의 결성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루어졌다. 유족회의 공식 기록물에서 1대 유족회로 기록된 신원유족회의 구성과 주요 임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32]

---

28) 학살에 대한 언론보도 및 국회 조사가 적극적으로 있었던 영남 지역에서는 유족들의 규합과 유족회 조직이 빠르게 일어났다. 여기에는 영남 지역이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에게 점령당하지 않았거나 매우 짧은 기간 점령된 곳이었다는 역사적 배경이 작용하고 있었다. 영남 지역의 언론사들 역시 같은 이유로 진보성을 유지한 채 4월 혁명 시기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기에 학살 문제를 제기하는 유족들에게 우호적인 입장일 수 있었다. 유족과 언론의 연계는 쿠데타가 발생하기 전까지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유지되었고, 언론은 유족의 우호 세력으로 존재했다. 이창현, 앞의 논문, 219-222쪽.

29) 당시 묘비건립 추진위원회 구성은 거창사건관리사업소, 거창사건추모공원조성사업자료집, 2008, 25쪽.

30) (사)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 2018년 제67주기 거창사건희생자 제30회 합동 위령제 및 추모식 자료집, 2018 (4.18), 35쪽.

31) 노용석, 앞의 책, 83-84쪽.

32) 김운섭, 거창양민학살: 억울한 죽음 뒤처리, 67쪽; 2017년 현재 11대에 이르는 (사)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의 임원진 명단은 다음과 같다(임기: 2017년 2월 4일-2019년 2월 3일). 고문: 문철주, 김운섭, 이철수, 조성제, 회장: 김길영, 부회장: 이성열, 이용구, 사무장: 정연주, 총무: 신도철, 서울지부장: 서종호, 홍장희, 부산지부장: 박만수, 임중섭, 감사: 김운용, 임춘섭, 이사: 문홍두, 이갑수, 김시동. (사)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 앞의 자료집, 35, 65쪽.

〈표 Ⅲ-1〉 유족회 1대 임원 구성과 명단

직 위	성 명
회장	문홍주
부회장	김재덕, 문병현, 김정욱
감사(총무)	김용제
총대	변민규, 김봉안, 이남섭, 이상배, 임채화, 정현장, 문홍한, 신윤철, 조종태, 이정준, 박덕재, 박정문, 김용원, 서수정, 홍상근, 고판준, 김용기

‘신원 유족회’로 시작한 유족회의 명칭은 1995년 ‘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를 거쳐 1997년 ‘(사)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로 변경된다. 다음 거창 유족회 회장 명부와 임기를 통해 현재 11대에 이른 유족회의 역사와 개칭 과정을 압축하여 볼 수 있다.[33]

〈표 Ⅲ-2〉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회 회장 명부(1954-현재)

	유족회장 성명(직함)	회기(임기)
1대	김병기(유족 대표)	1954. 4. 1. - 1960. 6. 1
2대	문홍주(신원 유족회장)	1960. 6. 1. - 1960.12.11
3대	신병균(신원 유족회장)	1960.12.11. - 1963. 2. 1
4대	문병현(회장직무대리 /거창사건희생자 위령추진위원회 회장)	1963. 2. 1. - 1997. 6. 5
5대	임호섭(사)거창사건 희생자 유족회장)	1997. 6. 5. - 2000. 1.24
6대	문철주(사)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회장)	2000. 1.24. - 2002. 2.14
7대	김운섭(사)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회장)	2002. 2.14. - 2004. 2.14
8대	조성제(사)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회장)	2004. 2.14. - 2006. 2.14
9대	이철수(사)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회장)	2006. 2.14. - 2010. 2.22
10대	김운섭(사)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회장)	2010. 2.22. - 2015. 1.26
11대	김길영(사)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회장)	2016. 2.14. -

신원유족회가 창립되고 1960년 11월 18일에는 거창군 신원면 대현리 551번지 박산합동묘역에서 ‘박산합동묘역 위령비’ 제막식이 거행되었다. 박산합동묘역 위령비 건립은 유족들의 의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위령비 건립 과정을 둘러싼 기억의 정치학을 다룬 한성훈에 따르면, 1960년 3월 합동묘비건립추진위원회 구성 시 사망자들은 “6.25 동란 수난자”였다. 그러나 그 직후 작성된 문건을 보면 원혼들이 “반공정신이 확고하여 국군을 환영하여 묵묵히 끌려 다녀 반항없이 참사”당하였다며, “마땅히 국가에서 위령비와

33) 거창사건 추모공원 홈페이지, 2018, <http://www.geochang.go.kr/case/Index.do?c=CS0402000000>, 검색일: 2018.12.25.

위령제를 행해야" 될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4・19 직후 정치적 민주화는 피해자들의 신원을 '전쟁의 고통 받은 자'에서 '반항 없이 참사당한 자'로 바꾸기에 이르렀고, 사건과 사망자들에 대한 유족들의 의식은 한층 집합적으로 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 변화는 같은 해 11월 18일 위령비 제막식 의례에서 국가의 합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대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유족들은 묘비건립을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계기일 뿐 아니라, 유사한 사건들의 모범이 된다고 여겼고 이 같은 일들이 민주주의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34]

이는 고인(故人)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으로 집합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유족회의 시인 전략이 '묘비의 정치'를 중심으로 발전되는 단면을 보여준다. 한성훈이 지적하듯, 기념물이 부재하는 공간은 곧 사건 그 자체의 부인이자, 기억의 사회적 틀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이는 공동체의 집합기억에 대한 원형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 점에서 위령비 복원은 곧 유족 정체성의 복원을 의미했다.[35]

2. 유족회 활동의 암흑기(1961-1987): 유족과 언론

2.1 5・16 정권의 박산묘역 파괴와 유족회의 암흑기(1961–1987)

하지만 5・16 군사쿠테타 이후 군부는 지역별 민간인피학살유족회 주요 간부를 재판에 부쳐 유죄를 선고하였고,[36] 주요 간부들이 구속된 이후 민간인피학살자유족회의 활동은 빠르게 소멸되었다.[37] 이로써 이후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운동은 전체적으로 암흑기에 접어들게 된다. 군부는 이 과정에서 유족들을 처벌하는 한편 특수한 파괴행위를 실시함으로써 유족회 활동 자체에 대한 상징적 경고를 가했는데, 그것이 바로 피학살자 유해 매장지에 대한 파괴였다. 군사쿠테타 세력은 4・19 혁명 이후 여러 지역에서 결정된 '장의위원회' 등을 통해 발굴되어 매장되어 있던 피학살자의 유해 및 위령비를 상징적으로 파괴하였다. 이 때 이들이 내세운 핵심적 '혁명공약'은 반공주

34) 한성훈, "기념물을 둘러싼 기억의 정치와 집단 정체성: 거창사건의 위령비를 중심으로", 52-57쪽.

35) 한성훈, 위의 논문, 57쪽.

36) 혁명검찰부와 혁명재판소가 민간인학살 유족들에게 적용한 죄목은 혁재혁검조직법이 제정된 다음날에 제정된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6조 '특수반국가행위'였다. 이동진, "국민과 비국민의 경계: 피학살자유족회사건을 중심으로", 148쪽.

37) 혁명재판소가 처리한 유족회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동진, 위의 논문, 148-156쪽.

의였다.[38]

대표적으로 군사쿠테타 세력은 거창군 신원면 대원리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 합동묘 및 위령비를 파헤치고 훼손하였다. 5.16 군사쿠테타 직후인 1961년 5월 18일, 이른바 군사혁명정부는 유족대표 17명을 반국가 단체 조직 혐의로 구속하였다.[39] 그리고 동년 6월 15일 군사 정권은 거창의 합동묘에 대한 개장 명령을 내렸는데, 경남도지사였던 최갑종은 거창의 피학살자 합동묘소(박산합동묘역)가 묘소설치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거창경찰서 신원지서장 이중화로 하여금 인부들을 동원하여 묘역에 묻혀 있던 유해를 흙과 함께 파헤쳐 유족들에게 강제로 수에 맞게 분배하여 가져갈 것을 종용하였다.[40] 유족들은 이 같은 조치에 극렬히 반대하였으며, 결국 봉분만을 제거한 후 위령비에 새겨진 추모글을 정으로 쪼아 글자를 알아볼 수 없게 한 뒤 파괴하여 땅속에 묻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합동묘역 훼손을 거부하는 유족에게 총칼을 들이대며 위협하기도 하였다. 피학살자 분묘의 파괴는 유족들로 하여금 가족의 억울한 죽음이 계속적으로 비정상적 죽음의 영역에 머무를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게 하였다. 세계사적 견지에서 보더라도 국가가 국민의 죽음과 의례과정을 통제한 가공할만한 탄압조치는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데,[41] 이 또한 가해자의 국가범죄 부인이라는 맥락에서 일관되게 이해될 수 있다. 군부에게 민간인 학살문제가 제대로 규명된다는 것은 한국전쟁기 자신들의 학살전력이 드러나고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42]

여하튼 이 사건으로 유족회 간부들이 구속되면서, 유족회는 공식적인 활동을 중단·해산하여 긴 암흑기에 들어가게 된다. 4월 혁명의 국면에서 재개된 과거청산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 후, 유족들은 거창사건 유족이라는 이유로 공무원 등에 임용되지도 못하고, 또 거창사건을 언급조차 못하도록 요시찰과 감시를 받게 되었으며, 거창사건의 유족들이라는 사실마저도 숨긴 채 살아오다가 1988년에 와서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운동을 재개하기 시작했다.[43]

---

38) 노용석, 앞의 책, 108쪽.

39) 이후 1962년 7월 14일 거창사건 유족회는 무죄 판결을 받고 7월 15일 풀려난다. 한인섭, 앞의 책, 233쪽.

40) 김운섭은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묘역을 파헤쳐 놓고 부모형제 유골 찾아달라는 유 의 요구에 흙 한줌을 퍼주며 부모 형제라는 것이다. 강압에 못 이겨 받아들고 가다가 개천에 던져 버리기도 하고 선산에 묘를 만든 유족들도 있었다." 김운섭, 앞의 책, 71쪽.

41) 노용석, 앞의 책, 109-113쪽.

42) 이런 맥락에서 박명림은 1961년 5.16 군사쿠테타가 터진 뒤 쿠테타 주도세력들이 거창사건을 비롯해 일련의 민간인학살 진상규명노력에 대해 자행한 가공할 탄압조치를 지도부의 반공국시 때문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일면적 해석일 수 있음을 지적한다. 박명림, 앞의 논문, 79쪽.

하지만 1960년대에도 유족들은 합동묘소 수습을 위한 활동을 '암암리에' 이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유족회가 제공한 자료를 보면, 박산묘역 파괴사건이 있었던 시점부터 4년 후인 1965년 4월 5일 청명한식을 기하여 박산묘역에 성묘 유족들이 모여들었다. 봉분이 파헤쳐져 묘비가 철거된 채 흉물스럽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박산합동묘역 원상회복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명예회복운동을 결의하였다. 이날의 모임을 자료집은 '유족회 활동 재개'로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당시 거창, 산청, 함양 국회의원이었던 민병권 의원에게 호소한 결과 1967년 파헤쳐진 봉분과 노출된 유골을 수습하여 남, 여 묘소를 마련하였다.[44]

한편 유족회의 암흑기에 해당하는 유신 시기, 유족들을 따라다녔던 이른바 "통비(通匪)분자"라는 비국민으로서의 낙인과 연좌제의 사슬은 유족들의 정치의식을 크게 위축시켰고, "빨갱이가 아니란 걸 증명"하기 위한, 다시 말해 '국민됨'을 입증하기 위한 투표행동과 집합 전략을 낳기도 했다. 아래의 증언은 긴 세월 유족들이 감내해야했던 "신원사람"이라는 멍에와 피해의식을 잘 보여준다.

> "인자 그래 됐고, 고초나고 나서 국민 정서가 신원 사람은 친구도 안 되고, 신원 사람들은 앞으로 출세를 시키면 안 된다고…. 읍에서부터 우리를 참 깔보는 거에요. 읍의 유지들, 이런 사람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신원사건이 억울하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때 거창사건을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논께네 아까도 내가 이야기 했지만 오죽했으면 국민투표 할 때 우리가 100% 했어요. 99%가 아니라 100%라. 박정희 시대 국민투표를 몇 번 했거든요. 그걸 열람해보면 우리가 100%에요. 글을 몰라서 그렇지 절대로 우리가 빨갱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고."[45]

한편 1988년 유족회의 활동이 재개되는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거창사건을 다룬 언론보도의 잠재적 효과다. 대표적으로 『거창 양민학살: 억울한 죽음 뒤처리』(2017)를 집필한

43) 도경옥, 앞의 논문, 92쪽. 유족들이 겪은 고통은 경남신문 1988년 10월 12일자; 부산일보 1990년 9월 20일자; 경남신문 1991년 9월 8일자; 경남신문 1998년 3월 12일자 등에 소개되어 있다.

44) 1965년 유족들이 봉분의 원상 복구를 각계에 호소했고 1967년 봉분만 복구했다는 기사가 <아림신문> 1994년 9월 2일자에 보도되고 있다. 한인섭 편, 거창양민학살사건 자료집(Ⅳ),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356쪽; 이 때 어린이 묘는 성분을 짓지 않았다. (사)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 위의 자료집, 37쪽.

45) 이일우, "우리가 고소할 정신이 어디 있었겠소", 한인섭 편, 거창은 말한다: 생존자・체험자들의 반세기만의 증언, 경인문화사, 2007, 249-51쪽. 이러한 피해의식은 때때로 '거창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하거나 개명(改名)하는 전략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김운섭은 거창사건의 몇 안 되는 생존자로서 제7대와 10대 유족회의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유족회의 고문을 맡고 있다. 거창사건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직적 집필한 이 책에서 그는 <월간조선>에 보도되었던 "'거창양민학살' 피해자와 가해자"란 제목의 기사가 유족회의 존재를 인지하고 유족회 활동에 뛰어들게 된 생애사적 전환점(tuning point)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 "인생 초년에 만고풍상을 다 겪고 청춘기는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나와 회사에 다녔으며, 장년에는 조경 사업을 하면서 살았다. 엄청난 사건 생각하기도 끔찍하여, 잊고 살았는데 어느 날 월간조선은 내 눈을 놀라게 하였다.
>
> "'거창양민학살' 피해자와 가해자"란 제목의 기사가 37년만인 1988년에 유족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두 번 다시 생각하지 않으려 했는데, 그러나 너무 억울함으로 그들이 뒤집어 씌어놓은 불명예에 대해 명예회복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하던 사업도 접어버리고 유족회 문병현 회장님을 만나 지금까지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왔다."[46]

> "자립을 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뉴스도 접하게 되었고 잊고 살았던 거창사건이 가끔 신문에 보도되기도 하여 관심을 가졌는데, 특히 1967년에 김원기 기자가 동아일보에 연재한 비화 제1공화국(거창사건)을 읽었고, 1988년 월간조선 9월호에 '거창학살 가해자와 피해자'를 보고 기사를 쓴 김재명 기자를 찾아가 유족회가 있다는 것도 알고 학살을 지휘한 한동석의 집도 알았다."[47]

다음의 진술을 통해 1980년대 후반의 시점에서 그가 유족 운동에 참여하게 된 동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48]

> "학교 댕기면서 고향에 가끔 왔지요. 고향에는 아버지가 계시니까 왔고, 제가 유족회 활동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 1988년도 <월간조선> 9월호, 김재명 기자가 거창사건에 대해 쓴 기사를 봤다고. 그 책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 기자를 찾아 갔어요. 가서"거창에

46) 김운섭, 앞의 책, 8쪽.

47) 김운섭, 위의 책, 61쪽.

48) 사면은 피해자 권리구제 과정의 부당한 간섭이고 실질적인 불처벌(impunity)이며, 진실을 알 권리에 대한 계속적 침해 상황을 의미할 수 있다. 한성훈, "거창사건등 피해자의 손해 배·보상에 대한 제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국내학술대회 <거창사건과 이행기 정의> 자료집,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2018, 51쪽.

> 유족회 있냐?" 하니까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 당시가 문병현이라는 분이 회장을 할 때였어. "그런데 한동석이는 어디 사냐"고 하니까 "안양에 산다", 이거야, 그러면서 그 기자가 한동석이 주소, 전화번호, 또 부산에 사는 문병현 회장 주소, 전화번호 다 적어 줘서 자발적으로 문병현 회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 유족회가 있습니까?" 하니까 "있다", 이거야. "그라믄 나도 유족회 활동을 해야 되겠다"고 했어요.[49]

당시의 기사는 그에게 사면된 가해자 한동석의 현존과 유족회의 현존을 동시에 확인케 한 결정적 계기였던 셈이다. 이 사실은 1987년 민주화 이전 국가와 유족이 수직적으로 관계 맺는 협애한 정치 공간에서 언론이 피해유족들과 청중, 그리고 가해자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창(窓)이자 중요한 수행집단(carrier group)으로 역할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3. 유족회 활동의 재개와 성장기(1988-1996): 유족과 국가/국회

1980년 후반에 이르러서야 유족들은 합동묘소 위령비 원상회복 및 거창사건 희생자 명예회복과 배상을 1982년 6월 1일 전두환 대통령에게, 1988년 1월 24일 노태우 대통령에게 반복하여 진정・호소하였으나 정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유족들은 1988년 2월 15일 거창양민학살 희생자 위령 추진위원회 발족 및 궐기대회를 열고 박산 합동묘소까지 200여명이 참여하여 가두행진을 하면서 전국민에게 명예회복 및 손해배상에 관한 호소문을 발송하였다.[50] 이 과정에서 유족들은 박산골로 향해 땅속에 파묻힌 위령비를 28년 만에 지상으로 파내었다. 위령비는 이렇듯 민주화의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다시 공개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이 때 일반 국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보면 "거창 신원 양민학살사건은 광주의 모태"라고 규정함으로써 거창사건이 군부에 의한 민간인 살상이자 국가폭력이라는 점을 유족들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 보여준다.[51]

이즈음부터 1996년까지 초 유족회의 활동은 첫째, 위령추진위원회의 발족을 전환점으로 1989년 8월 29일 처음 개최한 <거창사건희생자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의 연례개최를 통한 사회적 인정 투쟁을 한 축으로 하고 둘째, <거창양민학살사건명예회복 및 특별조치법> 발의를 위한 국회 청원과 국회의사당 상경 투쟁을 통한 입법 청원 활동, 즉 법적

49) 김운섭, "그때 다섯 번 죽었다 살아난 기라", 한인섭 편, 앞의 책, 106-107쪽.

50) 당시 위령추진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회장: 문병현, 부회장: 임호섭, 총무: 조성제, 재무: 김만수다. (사)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 앞의 자료집, 38쪽.

51) 한성훈, "기념물을 둘러싼 기억의 정치와 집단 정체성: 거창사건의 위령비를 중심으로", 54쪽.

인정 투쟁이 주를 이루고 있다. 1988년 위령추진위원회 발족 이후 1996년 특별법 제정을 거쳐 1997년 사단법인으로 전환하게 된 유족회의 활동을 크게 두 차원으로 나누어 연대기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Ⅲ-3〉 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의 시인의 정치

위령 및 추모사업(사회적 인정 투쟁)		특별법 입법 사업(법적 인정 투쟁)	
1988. 2. 15.	위령추진위원회 발족	1988. 7. 16	국회 청원 요청
1989. 8. 29.	제38주년 거창사건희생자 제1회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	1988. 11. 7-8	국회 청원 입법 호소를 위한 국회의사당 상경 투쟁
1990. 9. 16.	제39주년 거창사건희생자 제2회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	1989. 9. 19.	제13대 국회 특별법 발의
1991. 9. 6.	제40주기 거창사건희생자 제3회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	1993. 1. 20.	특별법안 유보
1992. 8. 26.	제41주기 거창사건희생자 제4회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	1993. 3. 12.	특별법안 유보에 따른 유족 대표 상경 국회 방문
1993. 9. 5.	제42주기 거창사건희생자 제5회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	1993. 4. 30.	특별법 제정 촉구 유족 상경
		1993. 11. 30.	당무회의에서 법안 채택되었으나 국회에서 유보, 서울유족 100여명 농성 및 상경투쟁
1994. 9. 3.	제43주기 거창사건희생자 제6회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	1994. 9. 7. 1994. 12. 7.	유족 40여명 상경하여 김영삼 대통령 면담 요구/시위
1995. 10. 10.	제44주기 거창사건희생자 제7회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	1995. 7. 10.	지역출신 이강두 국회의원 국회 대정부 질의
1995. 11. 7.	위령추진위원회 총회 개최 “위령추진위원회 명칭 변경 – 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	1995. 11. 30.	제14대 정기국회 특별법 발의
		1995. 12. 16.	회기내 통과요구 상경투쟁
		1995. 12. 18.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1996. 9. 10.	제45주기 거창사건희생자 제8회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	1996. 1. 5.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률이 제5148호로 공포됨
		1996. 4. 6.	특별조치법 대통령 시행령이 14970호로 공포
		1996. 5. 11 - 7. 5.	희생자 및 유족 등록[52]
		1996. 12. 23.	유족 등록서류 명예회복심의원회 상정
1997. 3. 2.	거창양민학살희생자 유족회 총회		
1997. 6. 5.	사단법인 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 창립		

여타 지역의 유족회와 마찬가지로 거창 유족들에게 합동위령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가운데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상징적 의미를 갖는 행사다. 합동위령제는 희생자가 발생하게 된 사건의 경위와 추모 대상을 사전에 확인하고 선별하는 작업 위에서 진행하였다.

52) 당시 시행령이 특별법 제정 35일 뒤에 공포되어 유족 등록에서 171명이 누락되었다.

따라서 합동위령제는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는 원론적 의미를 넘어 사실 조사의 결과를 공공 공간에서 공식화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존재를 공공 영역에 드러내는 적극적인 집합행동 가운데 하나였다.[53]

그리고 특별법 제정을 위한 유족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1996년 1월 5일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법)이 공포되었다. 여기서 "거창사건등"이란 산청・함양군 일대의 학살을 염두에 두고 삽입된 것이다. 법률의 자구적 해석에 따르면 '거창사건'은 경남 거창군 신원면 일대의 민간인 학살을 말하고, '등'은 산청과 함양 일대의 피해를 일컫는다. 특별법 2조는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이 작전 수행 중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 시행령에는 그 발생 시점이 추가되었고 지역으로는 '거창'과 '등'으로 나누어 지시하고 있다.[54] 이 법은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사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과 묘지단장, 위령제례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제3조) 유족은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고(제5조), 유족의 합동묘역 관리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정부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제8조)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결정적으로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후 배상금 구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거창사건등 특별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의원 31인에 의해 제안되어 2004년 3월 2일 국회 본의회를 통과하였으나,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이었던 고건 총리가 3월 29일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전쟁 중에 일어난 민간인 희생에 대해 아직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지 않았고, 거창사건에 대한 보상이 향후 국가재정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된다"는 점 등이 이유였다.[55]

법적 배상 조항이 빠진 당시의 특별법 제정을 김운섭은 "이 법을 위해 생업을 포기하고 목숨 걸고 매달려왔는데" "알맹이는 쏙 빼버리고 껍데기뿐인 법"으로 회고하며 커다란 실망감과 좌절감을 드러내고 있다.[56] 실제 피해 구제 없이 낮은 차원의 명예회복을 법적으로 규정한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은 '(사)거창사건희생

53) 대체로 합동위령제의 준비 과정은 유족회의 결성과 강화에 기여했고, 추모행사는 지역 단위에서 여러 단체들과 주체들이 연대하는 장이 되기도 했다. 정호기, 앞의 논문, 61-71쪽.

54) 한성훈, 앞의 자료집, 3-4쪽.

55) 이형도, 앞의 논문, 98-99쪽. 최근 2016. 9. 6. 박범계 의원 등 17명이 거창사건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대한 보상을 반영하였다.

56) 김운섭, 앞의 책, 128-129쪽.

자유족회'와 '(사)산청・함양사건 양민희생자 유족회'의 엇갈린 반응과 감정적 갈등의 소재이자, 특별법 개정을 둘러싼 집합 행동과 인정투쟁의 공통된 배경이 되었다.

4. (사)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의 시인 전략(1997-): 유족과 시민사회

1997년 6월 5일 (사)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로 전환한 이후 2018년 현재까지 유족회의 활동을 살펴보면 거창사건 희생자와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거창사건 특별법 개정 법률안> 관련 입법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법적 인정 투쟁과 함께, 사회적 인정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이 두 차원에서 병행되었다. 첫째, 거창사건 추모공원의 건립과 유지를 위한 활동이다. 거창사건 추모공원은 1996년 특별법에 근거해 조성되었다. 1999년 1월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2004년 10월 준공기념식을 가졌다. 신원면 대현리 일대 49,133평 부지에 총 192억 원이 투입된 거창사건 추모공원 조성은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가차원의 위령사업이자, 거창사건 피해자에 대한 집단보상의 성격을 갖고 있다.[57]

무엇보다 거창사건 추모공원은 한국전쟁 당시 희생된 민간인들을 위해 국가가 조성한 몇 안 되는 추모공원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위상을 점한다. 추모공원은 고인(故人)의 희생을 기념하기 위한 추모시설인 동시에 거창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지역 주민 및 새로운 세대에게 알리고 전승하는 상설적인 교육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

둘째, 모두 7차례 개최된 학술토론회 또한 유족들의 시인의 정치의 중요한 축을 구성한다. 흥미로운 것은 시민사회단체가 주로 주도했던 1999년 이후 결성된 유족회의 경로와 달리, (사)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의 경우 유족회 스스로가 공청회 또는 학술대회를 조직하며 학계 및 지역 시민사회의 연계를 주도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이다.

실제 김운섭 전회장은 "법을 개정하려면 학술토론회나 공청회를 열어 사회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더 구체적으로 "사건을 정확히 정립"하기 위해[58] 2001년부터 유족회 주도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던 맥락을 상당한 지면을 할애해 회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학술토론회 개최는 추모식 자료집에서 유족회의 공식 경과보고에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다음은 2002년 10월 18일 열린 제4회 학술발표회 때 당시 유족회 대표(김운섭)의 인사말 전문이다.

57) 김기곤, 앞의 논문, 40-41쪽.

58) 김운섭, 앞의 책, 157쪽.

"한 시대에 가장 불행했던 "거창양민학살사건" 정립을 위하여 학술발표회에 자리를 같이하여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서울대 법학연구소 한인섭 부학장님과 먼 이곳까지 오셔서 주제와 토론을 하여주신 교수님들 유족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행사를 후원하여주신 김태호 군수님 고맙습니다. 학술발표회를 계기로 허위 날조된 거창양민학살사건이 세상에 바르게 알려져 사회공감대가 형성되어, 유족들의 한을 풀 수 있는 특별법개정이 입법화되기를 바라며 인사에 가름합니다."[59]

한인섭 교수도 유족회의 방문과 적극적 요청에 의해 거창사건 관련 진실규명을 위한 학술적 작업에 관여하게 된 맥락을 그가 편집한 <거창양민학살사건 자료집>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편자는 거창과 아무 개인적 연고가 없다. 편자의 관심은 서울대 법학연구소에서 <한국전쟁 40주년의 법적 조명>을 주제로 심포지움을 하면서, 한국형사법의 가장 암울한 장을 기록한 '부역자재판'의 문제점을 연구했을 때로부터 비롯된다. 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이란 악법과 그 법을 실행한 부역자재판을 검토하면서, 당시의 인명경시의 풍토 속에서 양민학살사건이 빈발할 수 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거창사건을 둘러싼 전시 국회와 정부의 공방전을 읽으면서 엄혹한 전시 하에서 인권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절감했다. 이 논문을 읽고 내 연구실을 방문한 거창사건유족회의 인사로부터 거창사건을 생생하게 듣게 되었다. 특히 이철수 고문의 절절한 호소와 눈물이 아니었던들, 감히 이 주제로 뛰어들 엄두를 못했을 것이다. 유족들의 호소에 미력이나마 보태고자, 거창사건의 진실에 파고들게 되었다."[60]

총 7차례에 걸쳐 개최된 학술토론회의 개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61]

59) 이하 밑줄의 강조는 필자. 여기서 "사회적 공감대"의 문맥은 양의적이라 보인다. 2004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이 압도적 다수로 가결되었음에도, 정부는 3월 25일자로 이의를 붙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였다. 이 때 정부가 제시한 재의의 이유는 이 법안이 "6・25전후 민간인 희생자 보상에 대한 최초의 입법례"가 되고, 이러한 사건에 대해 "명예회복 외에 추가적인 보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다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인섭, "거창사건 피해자를 위한 배상입법: 그 당위와 내용", 140쪽.

60) 한인섭 편, 거창양민학살사건 자료집(Ⅰ), iv쪽. 같은 내용이 보다 자세하게 거창사건 생존 체험자들의 증언집인 『거창은 말한다』 서문에 언급되고 있다. 한인섭 편, 앞의 책, 4-5쪽.

61) 아래의 내용은 김운섭의 회고록과 증언을 참고해 재구성한 것이다. 김운섭의 회고록에서 1회 학술토론회가 1996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2차 면접 과정에서 1993년이었다는 점이 재확인되었다. 한편 (사)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의 추모식 자료집에는 1993년 학술대회를 제외한 나머지 6차례의 학술토론회가 기록되어 있다.

〈표 Ⅲ-4〉 거창사건 관련 학술대회 및 공청회 개요

회	일시/장소	주제 및 내용
제1회	1993. 9. 26. (거창별궁예식장)	거창양민학살 문제와 해결의 전망 주제발표: 박원순 변호사, 장완익 변호사 주관: 거창양민학살유족회 후원: 거창농민회, 거창역사교사모임, 거창신문사, 전교조 거창지회, 우리문화연구회, 아림신문사
제2회	2000. 10. 21. (거창전문대강당)	거창사건을 말한다 주제발표: 김동춘(성공회대 교수), 강정구(동국대 교수), 심우성(공주민속박물관장) 지정토론: 김운섭(유족회 총무), 조익현(대성중 교사), 윤구(아림신문 사장), 신용균(거창역사교사모임 회장) 주관: 거창 역사교사 모임
제3회	2001. 11. 15.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거창사건관련 특별조치법의 개정을 위한 공청회 주제발표: 박명림(고려대 연구교수), 한인섭(서울대 교수) 지정토론: 서중석(성균관대 교수), 김순태(한국방송통신대 교수), 김영택(한국역사기록원 수석부회장), 박준석(변호사), 이강두(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철수(거창사건유족회 고문), 민수호(산청 함양 양민사망자유족회 수석부회장)
제4회	2002. 10. 18. (거창군 문화복지센터)	거창사건 정치적 법처리과정 주제발표: 박명림(연세대 교수), 한인섭(서울대 교수) 지정토론: 안철현(경성대 교수), 김창록(부산대 교수), 이철수(유족회 고문)
제5회	2003. 3. 13.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거창사건 관련법의 개정을 위한 공청회 주제발표: 박명림(연세대 교수), 한인섭(서울대 교수) 토론: 김성순(민주당 국회의원), 김용균(한나라당 국회의원), 박갑주(민주사회를 이한 변호사모임), 김한식(국방대학원 교수), 조국(서울대 교수)
제6회	2004. 11. 19.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거창사건 희생자를 위한 공청회 주제발표: 안경환(서울대 학장), 한인섭(서울대 교수), 임상혁(숭실대 교수) 지정토론: 박명림(연세대 교수), 이경우(변호사), 권대우(한양대 법대교수)
제7회	2006. 11. 22. (경남 창원시 컨벤션센터)	발표 및 토론: 한인섭(서울대 교수), 조진만(서울대 교수), 문준영(부산대 교수), 도진순(창원대 교수)

이 기록은 유족회가 사건의 진실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고 사회적 공감을 확장해가며 법개정 활동을 주도하는 수행집단으로 변모해 왔음을 잘 보여준다.

5. 이행기 정의와 감정의 민주화: 유족과 유족

이제까지 살펴보았듯 유족회의 존재는 언론과 국회가 학살 청산에 나서도록 한 요소였고, 실제 유족회는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문제 해결에 나섰던 과거청산운동의 핵심 주체였다. 거창 유족회의 주요 시인 전략은 산청・함양 희생자 유족회의 경우에도 유사한 형태로 재현된다. (사)산청・함양사건 양민희생자 유족회는 방곡지구 유족들이 1953년 4월 <동심계>(회장 김명우)를 조직하여 모임을 은밀히 유지하다 1988

년 4월 경남 지역 언론(부산일보, 신경남일보)을 통해 산청・함양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을 계기로 1989년 4월 25일 <가현・방곡・점촌・서수지역 양민학살 유족회>를 구성한 것이 단초가 되었다. 이후 1990년 3월 15일 유족회는 <위령제 및 위령탑 건립 추진위원회>를 발족했고 1993년 4월 25일 제5회 추모제에서 <산청・함양 양민사망자유족회>로 이름을 개칭하였다.[62] 이 시기 산청・함양 유족회의 주요한 시인 전략은 산청・함양사건이 거창사건과 "동일시기, 동일부대, 동일잔전권역, 동일 작전에 이루어진 동일사건임"을 주장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1996년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제정 과정에서 "거창사건 등"이라는 자구 수정을 통해 산청・함양사건이 동일법령의 적용을 받게 된 것도 산청・함양 유족회의 적극적 요청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63]

특별법 제정 이후 유족회는 2003년 12월 13일 유족회 임원회의를 거쳐 <산청・함양사건 희생자유족회>로 이름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산청・함양사건 자료 및 역사서를 간행하기로 결정하였다.[64] 그 첫 번째 결실이 『산청・함양사건의 전말과 명예회복』(강희근 저, 2004)이다. 또한 산청・함양 지역 유족회 측이 제공한 자료를 보면, 2001년 거창군과 거창사건 유족회가 주관한 학술대회에 토론 참여를 한 것과 2004년과 2011년 2회에 거쳐 산청・함양사건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 사실을 비중 있게 기록하고 있다.

〈표 Ⅲ-5〉 산청・함양사건 관련 학술회의 개요

회	일시/장소	주제 및 내용
제1회	2004. 8. 3. (경상대학교 남명회관)	제1회 산청・함양사건 학술회의 - 산청・함양사건의 재조명 주제발표: 강희근(경상대 교수), 이창호(경상대 교수) 지정토론: 박노정(진주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서봉석(산청군의회 의원), 민수호(산청・함양사건 양민희생자 유족회 수석부회장), 이창수(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통합특별법 쟁취위원회 위원장), 강기갑(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주최: 산청・함양사건 희생자유족회 주관: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제2회	2011. 8. 31. (국회 헌정기념관)	제2회 산청・함양사건 학술회의 – 끝나지 않은 국가의 책임 주제발표: 이창호(경상대 교수), 전갑생(부경사학연구원), 안김정애(산청・함양사건 유족회 자문위원) 지정토론: 강희근(경상대 교수), 최관호(서남대 교수), 김득중(국사편찬위원회), 이창수(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운영위원회)

62) 강희근, 앞의 책, 184쪽.

63) 특별법에 따라 2004년에 거창사건 추모공원이 조성된 것처럼, 산청・함양사건 추모공원과 희생자합동묘역이 2004년 준공을 시작하여 2008년 조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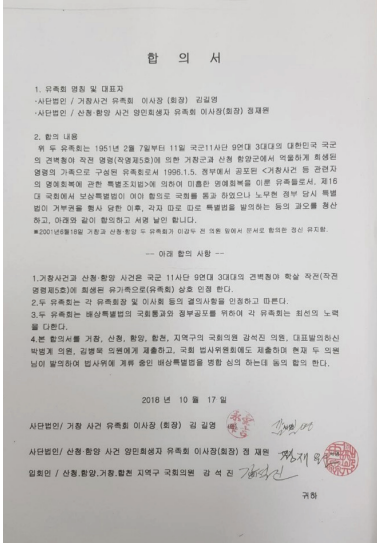
64) (사)산청・함양사건 양민희생자유족회, 2009년도 제58주기 산청・함양사건 양민희생자 제22회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 자료집, 2009, 23-26쪽.

이는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공론화하는 작업에 유족회가 주도하여 학계 및 시민사회를 연계한 일례에 해당하며, 거창 및 산청・함양 유족회가 과거청산운동에서 서로의 경로를 참조하며 전개되고 있는 과정적 국면을 드러내 보여준다.

특히 2018년 10월 17일 거창 유족회와 산청・함양 유족회의 극적인 '합의'는 거창・산청・함양 사건 유족운동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 평가된다. 앞서 언급했듯, 그간 피해 구제와 배상 입법의 지연에 따른 유족들의 만성화된 피로감 및 피해의식은 특별법 개정안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으로 이어졌고, 두 유족회의 통합적 대응 및 연대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어왔다. 그 갈등을 잘 보여주는 것이 20대 국회에 두 유족회를 중심으로 각각 다른 두 개의 배상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거창 출신 국회의원인 박범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창사건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산청 출신 국회의원인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창사건등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그것이다. 두 개정안은 "거창사건"과 "거창사건등"이라는 용어의 채택과 그에 따른 정의를 제외하면 세부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두 법안의 차이는 서로 다른 명명을 통해 산청함양사건을 제외하는가(박범계 의원 발의안), 포함하는가(김병욱 의원 발의안) 여부에 있을 뿐이다.

그러던 중 결정적으로 지난 2018년 10월 17일 "두 유족회는 지난 15년 동안의 과오를 청산하고 다시 한 뜻으로 나아갈 것을 약속"하며 법사위에 계류 중인 배상특별법을 병합 심의하는데 합의하며 합의서를 작성하였다.[65] 그 골자를 살펴보면, "두 유족회는 …… 1951년 2월 7일부터 11일,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의 대한민국 국군의 견벽청야 작전 명령(작명 제5호)에 의한 거창군과 산청・함양군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의 가족으로 구성된 유족회로서" "1993. 1. 5. 정부에서 공포된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미흡한 명예회복을 이룬 유족들로서" "각자 따로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의 과오를 청산하고" 크게 다음의 두 가지

〈사진 Ⅲ-1〉 합의서



합 의 서

1. 유족회 명칭 및 대표자
·사단법인 / 거창사건 유족회 이사장 (회장) 김길영
·사단법인 / 산청·함양 사건 양민희생자 유족회 이사장(회장) 정재원

2. 합의 내용
위 두 유족회는 1951년 2월 7일부터 11일 국군11사단 9연대 3대대의 대한민국 국군의 견벽청야 작전 명령(작명제5호)에 의한 거창군과 산청 함양군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의 가족으로 구성된 유족회로서 1996.1.5. 정부에서 공포된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미흡한 명예회복을 이룬 유족들로서, 제16대 국회에서 보상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 하였으나 노무현 정부 당시 특별법이 거부권을 행사 당한 이후, 각자 따로 따로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의 과오를 청산하고,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서명 날인 합니다.
※2001년8월18일 거창과 산청·함양 두 유족회가 이념두 전 의원 당에서 문서로 합의한 정신 유지함.

-- 아래 합의 사항 --

1.거창사건과 산청·함양 사건은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의 견벽청야 학살 작전(작전명령제5호)에 희생된 유가족으로(유족회) 상호 인정 한다.
2.두 유족회는 각 유족회장 및 이사회 등의 결의사항을 인정하고 따른다.
3.두 유족회는 배상특별법의 국회통과와 정부공포를 위하여 각 유족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4.본 합의서를 거창, 산청, 함양, 합천, 지역구의 국회의원 감석진 의원, 대표발의하신 박범계 의원, 김병욱 의원에게 제출하고, 국회 법사위원회에도 제출하며 현재 두 의원님이 발의하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배상특별법을 명합 심의 하는데 동의 합의 한다.

2018 년 10 월 17 일

사단법인/ 거창 사건 유족회 이사장 (회장) 김 길영

사단법인/ 산청·함양 사건 양민희생자 유족회 이사장(회장) 정 재원

입회인 / 산청,함양,거창,합천 지역구 국회의원 감 석 진

귀하

65) (사)산청・함양사건 양민희생자 유족회, 2018년도 제67주년 산청・함양사건 양민희생자 합동위령제 추모식 자료집, 2018, 15쪽. 인용 부분은 (사)산청・함양사건 양민희생자 유족회 정재원 회장의 인사말에서 가져온 것이다.

합의를 달성하였다.[66] 첫째, 거창사건과 산청함양사건은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의 견벽청야 학살 작전(작전명령제5호)에 희생된 유가족(유족회)으로 "상호 인정"한다는 것이며, 둘째, 배상특별법의 국회통과와 정부통과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같이한다는 것이다.

이 지점은 한국 이행기 정의의 전망에 함의하는 바가 크다. 여러 논자들이 지적하듯 과거청산 정의의 관철은 합리적 이성의 기획이 아니라 과거청산을 둘러싼 주요한 행위자들의 감정의 민주화, 즉 정치 영역 기저에 자리한 사회적 감정구조의 변화를 수반하는 변환적 정의(transformative justice)의 과정이다.[67] 이영재 또한 공감적 정의라는 개념을 통해 포착한 바 있듯, 이행기 정의의 관철은 사회적 정의감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를테면 보복과 처벌을 요구하는 응보 감정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타자와 공동체를 전제로 작동하면서, 미래의 사회적 정의파괴를 방지하는 친사회적이고 긍정적 역할을 한다.[68]

하지만 실제 유족들의 경험 영역에서 표현되고 발현되는 응보 감정은 매우 복합적이고 양가적이다. 한편으로 정의감과 짝을 이루는 응보 감정은 불의에 맞선 저항과 응징의 동력이 되지만, 피해의식과 짝을 이루는 응보 감정은 여타의 집단에 대한 배타적 감정과 경계짓기를 추동하는 기제가 된다. 실제 거창사건 유족회는 여러 면에서 여타 과거청산 운동의 선례가 되었지만, 긴 세월의 투쟁 속에서 쌓인 고립감과 만성적 피로감은 여타 유족회 및 전국 단위 유족운동과의 연계 및 연대를 방해하는 결정적 장애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고립감과 피로감, 피해의식을 강화한 두 가지 제도적 조건(요인)이 자리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첫째, 응보적 정의뿐 아니라 배상적 정의가 결여된, 즉 피해 구제가 결여된 형식적 명예회복의 문제다. 명예회복이 도덕적 인정의 계기만을 추구하고 피해 구제의 계기와 정치적 재구성의 계기를 방기한다면 명예회복은 도덕적으로는 충일한 관념이 되겠지만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공허한 수사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사회적 인정, 경제적 재분배(피해 구제), 정치의 재구성은 과거청산운동의 세 가지 목표이며, 이에 비추어 거창 사건의 명예회복은 대단히 초보적인 형태의 사회적 인정만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69] 둘째, 개별 지역 및 개별 사건 중심으로

66) (사)산청・함양사건 양민희생자 유족회, 위의 자료집, 39쪽.

67) 김명희, "한국 이행기 정의의 감정동학에 대한 사례연구: 웹툰 <26년>을 통해 본 5・18 부인(denial)의 감정생태계", 기억과 전망 제34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6, 64쪽.

68) 이영재, "이행기 정의의 본질과 형태에 관한 연구: 공감적 정의 원리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12권 제1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2, 129쪽.

진행된 과거청산 운동은 한편으로 이 글의 도입부에서 언급한 '거창 사건 부인'의 직접적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에 더하여 개별 유족회의 노력이 좀처럼 통합되기 어려웠던 두 번째 이유는 국가보안법이 부과한 이데올로기적 제약이 여전히 강고하기 때문이다. 다른 과거청산 유족 운동과 달리 한국전쟁기 피학살자 유족운동의 경우 – 그 안에서도 유형별 편차는 있지만 – 유족들 자체가 연좌제 등을 매개로 한 국가의 이데올로기적 낙인의 직접적 피해자였다. 이로 인해 오랜 세월 유족들이 감내해야했던 극심한 고통과 고립감은 여타 유족운동과의 연대와 통합(입법)의 노력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곤 했다. 이 점에서 특별법 개정안을 둘러싼 두 유족회의 이번 '합의'는 고통과 분노, 반목과 피해의식에 기반한 개별 유족회의 응보 감정이 유족들 간의 상호인정과 연대, 반성과 화해라는 공적 영역의 감정으로 전환되는 새로운 이행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Ⅳ. 나가며

이 글은 거창・산청・함양 사건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주변화 되었던 유족운동의 역사를 복원하고 재조명하기 위한 시도였다. 이제까지 살펴보았듯, 국가 가해자의 부인 행동에 대응하여 전개된 유족들이 시인 전략은 1) 기억(기념) 운동을 통한 사회적 인정투쟁과 2) 법적 인정 투쟁을 통한 명예 회복 운동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특징을 보였다. 이 속에서 유족회는 죽은 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과 슬픔을 공유한 원한 공동체이자 애도의 공동체이며, 언론 및 시민사회와 공조하여 사건을 둘러싼 진실을 규명・발화하고 후대에게 전승하고자 하는 수행집단으로 발전해왔다. 유족운동이 피학살에 대한 기억 운동을 한 축으로 하였듯, 국가의 초기 유족회 탄압 및 부인 행동 또한 유족들의 기억과 기념물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묘비의 복원과 건립에서 시작한 기억 운동은 이후 합동 분묘안장, 합동 묘비 건립, 추모 및 기념사업 등의 순서로 전개・발전되었다.

'거창사건'은 다른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사건을 규명하는 도화선이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살아남은 유족과 가족의

69) 이재승, "묘지의 정치: 명예회복과 인정투쟁을 둘러싸고", 통일인문학 제68집,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6, 265쪽.

끈질긴 노력은 우리 사회가 민간인 희생자의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관련 유족회가 대부분 시민사회가 민간인 학살 진상조사를 하는 과정을 계기로 하여 시민사회의 지원 속에 결성되거나[7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설립된 이후에는 국가의 진상조사가 계기가 되어 결성되는 것과 달리[71] 거창사건 유족회는 사건 직후 국면의 특수성으로 인해 언론 및 국회와 주요하게 상호작용하며 비교적 일찍 재개되어 여타 유족 운동의 선례가 되었다. 동시에 5・18 민주화운동이나 4・3 사건 등의 해결 과정을 참고하며 스스로의 시인 전략을 거듭 (재)조직해 왔다는 점도 전체 과거청산 운동의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시사점이다.[72]

동시에 거창사건 유족회는 전체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유족운동의 포문을 열었지만, 동일한 사건에서 파생된 두 개의 유족운동의 역사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학살사건을 단위로 결성된 유족회에 기반한 과거청산 운동의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 보다 통합적 시각에서 거창・산청・함양 유족운동의 발전 과정을 아울러 참고할 때, 이러한 로컬리즘과 분리주의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한국 이행기 정의의 진전에 중요한 과제로 제기된다.

70) 정호기, 앞의 논문, 46쪽.

71) 김상숙, “대구 10월항쟁 유족회와 과거청산 운동”, NGO 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NGO학회, 2016, 144쪽.

72) 여러 과거청산의 시공간이 서로를 참조하며 발전해가는 이행기 정의 국면의 역동성에 대한 이론적 시야를 열어주는 논의로 이재승, “이행기 정의와 크로노토프”, 민주법학 제64권, 민주주의법학연구소, 2017, 105-148쪽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문헌

1. 단행본

강희근, 산청・함양사건의 전말과 명예회복,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회, 2004.

김운섭, 거창양민학살: 억울한 죽음 뒤처리, 2017.

노다 마사아키, 서혜영 옮김, 떠나보내는 길 위에서: 대형 참사 유족의 슬픔에 대한 기록, 팬타그램, 2015.

노용석, 국가폭력과 유해발굴의 사회사: '빨갱이'가 된 인간의 뼈, 그리고 유해발굴, 산지니, 2018.

리영희, 역정: 나의 청년시대, 창작과비평사, 1988.

미나베 유코, 열사의 탄생: 한국민중운동에서의 한의 역학, 김정남 옮김, 민속원, 2015.

알렉산더, 제프리, 박선웅 옮김, 사회적 삶의 의미: 문화사회학, 한울, 2007.

정재원, 운명, 일송미디어, 2004.

차석규, 남부군과 거창사건, 창작예술사, 1988.

코언, 스탠리, 조효제 옮김, 잔인한 국가, 외면하는 대중: 왜 국가와 사회는 인권침해를 부인하는가, 창비, 2009.

한상구, "피학살자 유가족 문제: 경상남북도지역 양민피학살자유족회", 한국사회 변혁과 4월 혁명, 10월 혁명연구소, 1990.

한인섭 편, 거창은 말한다: 생존자・체험자들의 반세기만의 증언, 경인문화사, 2007.

Aretxaga, Begoña, *Shattering Silence: Women, Nationalism, and Political Subjectivity in Northern Ireland*,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Teitel, Ruti G., *Transitional Justice*, Oxford University Press on Demand, 2000.

2. 학술지

김기곤, "국가폭력, 하나의 사건과 두 가지 재현", 민주주의와 인권 제9권 제1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9, 27-63쪽.

김동춘, "거창사건의 전개과정"(2001. 4), 한인섭 편, 거창양민학살사건 자료집(Ⅶ),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2-10쪽.

김명희, “한국 이행기 정의의 감정동학: 웹툰 <26년>을 통해 본 5・18 부인(denial)의 감정생태계”, 기억과 전망 제34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6, 55-101쪽.

_____, “국가에 대항하는 가족: 세월호 연대의 감정동학과 루트 패러다임”, 탐라문화 제56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7, 215-246쪽.

_____, “일본군 위안부 운동과 시인(recognition)의 정치: 한국의 사회적 기억 공간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34권 제3호, 한국여성학회, 2018, 113-146쪽.

김백영・김민환, “학살과 내전, 공간적 재현과 담론적 재현의 간극: 거창사건추모공원의 공간 분석”, 사회와 역사 제78집, 한국사회사학회, 2008, 5-33쪽.

김상숙, “대구 10월항쟁 유족회와 과거청산 운동”, NGO 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NGO학회, 2016, 119-149쪽.

김왕배, “한국전쟁의 기억과 반공(反共) 보수성의 고착: ‘남정리’ 한 부부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제42권 제1호, 한국문화인류학회, 2009, 39-79쪽.

노용석,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회의 결성과정과 유족의 역사인식에 대한 연구”, 제노사이드연구 1, 한국제노사이드학회, 2007, 73-103쪽.

도경옥, “거창양민학살사건의 국제형사법적 분석”, 서울국제법연구 제10권 제1호, 서울국제법연구원, 2003, 85-114쪽.

박명림, “국민형성과 내적 평정: ‘거창사건’의 사례연구-탈냉전 이후의 새 자료, 정신, 해석”, 한국정치학회보 제36권 제2호, 한국정치학회, 2002, 69-91쪽.

박정석, “진주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 희생자와 유족들: 구술사례를 중심으로”, 역사비평 제96호, 역사문제연구소, 2011, 351-383쪽.

이덕연, “‘거창사건’에 대한 대법원판결(2008.5.29. 2004다33469) 평석: ‘견벽청야’(堅壁淸野)의 군사작전과 법리구성의 구조적 유사점을 주목하며”, 저스티스 제129호, 한국법학원, 2011, 297-329쪽.

이동진, “국민과 비국민의 경계: 피학살자유족회사건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제101집, 한국사회사학회, 2014, 141-182쪽.

이영재, “이행기 정의의 본질과 형태에 관한 연구: 공감적 정의 원리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12권 제1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2, 121-151쪽.

이윤갑, “한국전쟁기 경북 성주군의 부역자 처벌과 피학살자유족회 활동”, 한국학논집 제47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2, 253-291쪽.

이재승, “묘지의 정치: 명예회복과 인정투쟁을 둘러싸고”, 통일인문학 제68집, 건국대학

교 인문학연구원, 2016, 257-296쪽.

_____, “이행기 정의와 크로노토프”, 민주법학 제64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7, 105-148쪽.

이창호, “산청・함양・거창 민간인학살사건의 법적 재검토”, 민주법학 제26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4, 137-155쪽.

_____, “산청・함양・거창 민간인학살사건에 대한 형사법적 재조명”, 민주법학 제47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1, 211-243쪽.

이형도, “거창 민간 학살 사건”, 한일교육연구 통권 제19호, 한일합동교육연구회, 2013, 92-100쪽.

임상혁, “거창사건 관련 판결과 소멸시효 항변”, 법과 사회 제27권 제27호, 법과 사회이론학회, 2004, 157-182쪽.

정호기,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의 결성과 진상규명운동: 전라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9권 제2호, 학연문화사, 2006, 41-76쪽.

한성훈, “거창사건의 정치사회학적 분석: 기억의 정치와 학살의 승인”, 사회와 역사 제69집, 한국사회사학회, 2006, 215-244쪽.

_____, “기념물을 둘러싼 기억의 정치와 집단 정체성: 거창사건의 위령비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제78집, 한국사회사학회, 2008, 35-63쪽.

한인섭, “거창양민학살사건의 법적 해결: 관련법의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제42권 제4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174-214쪽.

_____, “거창사건 피해자를 위한 배상입법: 그 당위와 내용”, 법과 사회 제27권 제27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04, 137-155쪽.

Kim, Myung-Hee, “The Possibility of Intimate Public Sphere: Political Familism of Divided Koreans”, *S/N Korea Humanities* 2(1), The Institute of Humanities for Unification, 2016, pp.75-101.

Wright, Brendan, “Raising the Korean War Dead: Bereaved Family Associations and the Politics of 1960-1961 South Korea”, *The Asia-Pacific Journal* 41(2), 2015, pp.1-19.

3. 학위논문

김산영, “민간인학살사건에 대한 유족의 인식과 대응: 청도・경산 지역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김유선, “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의 소장 기록물 분류표 개발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이창현, “1960년대 초 피학살자유족회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4. 자료집

거창사건관리사업소, 거창사건추모공원조성사업자료집, 2008.
(사)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 2018년 제67주기 거창사건희생자 제 30회 합동 위령제 및 추모식 자료집, 2018.
(사)경남민예총, “통한(痛恨)의 역사(歷史), 문학으로 만나다: 산청・함양 사건과 민간인 학살”, 2018.
(사)산청・함양사건 양민희생자유족회, 2009년도 제58주기 산청・함양사건 양민희생자 제22회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 자료집, 2009.
(사)산청・함양사건 양민희생자 유족회, 2018년도 제67주년 산청・함양사건 양민희생자 합동위령제 추모식 자료집, 2018.
안김정애, “한국전쟁기 한국군 11사단에 의한 산청・함양 민간인 집단학살사건: 국가기록에 나타난 사건 조사와 피해여성들의 삶”, 제60주년 산청・함양사건 학술회의 자료집, 201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경남 산청・거창 등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 및 불능결정서, 2010.
한성훈, “거창사건등 피해자의 손해 배・보상에 대한 제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국내학술대회 <거창사건과 이행기 정의> 자료집,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2018.
한인섭 편, 거창양민학살사건 자료집(Ⅰ), (Ⅱ), (Ⅲ), (Ⅳ), (Ⅴ), (Ⅵ), (Ⅶ),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2007.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거창 및 산청・함양 사건 관련자 명예회복 노력과 성과, 2012.

5. 신문기사

임영태, “군경토벌 중 민간인 학살사건(2)-거창・산청・함양 학살사건과 정부의 조직적 은폐”, 통일뉴스, 2016.12.6.,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9050>, 검색일: 2018.12.5.

장영철, “‘거창학살사건’인가, ‘거창・산청・함양학살사건’인가”, 오마이뉴스, 2016.9.2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45616>, 검색일: 2018.10.5.

진실위 조사관 백서 준비모임, “이승만 대통령이 단속한 ‘부끄러운 치마 속’, 참담했다: [남겨진 진실 미완의 화해⑤ 산청・함양・거창 민간인 학살] 작명 5호” “전원 총살하라”, 오마이뉴스, 2011.7.14.,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94751>, 검색일: 2018.10.5.

6. 웹자료

거창사건 추모공원 홈페이지, 2018, <http://www.geochang.go.kr/case/Index.do?c=CS04020000000>, 검색일: 2018.12.25.

산청함양사건 추모공원 홈페이지, 2018, <http://www.sancheong.go.kr/shchumo/index.do>, 검색일: 2018.12.15.

7. 면접자료

강○○ 면접자료, 2018.9.5.

김○○ 면접자료, 2018.9.15., 2018.9.16., 2018.11.16.

강○○ 면접자료, 2018.9.29.

정○○ 면접자료, 2018.11.30.

[Abstract]

The Movement of the Bereaved Families of Geochang-Sancheong-Hamyang Massacre:

The Mourning Method and the Emotional Dynamics of the Bereaved Families

Kim, Myung-Hee*

This study examines the mourning method of the bereaved families who lost their family members during the Geochang-Sancheong-Hamyang Massacre. They have appealed to two sorts of recognition strategies to redress the social and institutional denial of these crimes by the state. On the one hand they have fought to get social recognition by constructing tombstones for victims and holding commemoration ceremony of the massacre, on the other hand they have fought to get legal recognition by demanding the legislation of state reparations.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Bereaved Family Association of Geochang' and the 'Bereaved Family Association of Sancheong-Hamyang Massacre' have played a critical role in the movement for Rectifying the Past in Korea by enhancing social empathy to the truth of these civilian massacres.

[Key Words] The Movement of the Bereaved Families of Geochang–Sancheong–Hamyang Massacre, Politics of Denial and Recognition, Political Bereaved Families, Mourning Method of the Bereaved Families, Social Empathy, Transformative Justice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